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공영홈쇼핑  
**콘텐츠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공영홈쇼핑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과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상품의 개발과 유통 지원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공영홈쇼핑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상호 합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1.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2. 문화콘텐츠 상품개발과 유통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3. 콘텐츠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4. 정보 공유 및 보유 인프라의 상호 이용 협조
5. 기타 위 업무들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의 협조

**제 3 조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관계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본 양해각서의 구속력】**

본 협약은 제 3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5조 【협약의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 6조 【본 양해각서의 변경 해지】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유효기관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본 협약의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일방이 상대방을 부당히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각 기관의 정책 또는 환경의 변화, 기타 천재지변 등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7 조 【기타】

1. 본 협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공영홈쇼핑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9월 12일



원장 김 영 준



대표 최 창 희

